

#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5-6
----------	--------

제출연월일	2005. 3. 3
제출자	사천시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 내용

- 가.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함
- 나.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위원중 호선) 포함 30인 내외
  - 하부 조직 : 2개 분과 위원회
  - 위원의 임기 : 2년
  - 운영 : 정례회 연2회(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5. 1. 27 ~ 2005. 2. 19)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아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 찾기 운동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원 위·해촉)** ①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